감사보고서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조사-



목 차

I . 7	감사실시	개요 …	•••••••	••••••	•••••	••••••	• 1
1.	감사배경	및 개요	••••••	••••••	•••••	••••••	 1
2.	중점 감사	사항	•••••	••••••	•••••	••••••	 1
II. 7	감사결과	••••••	•••••••	•••••••	••••••	••••••	• 3
1.	감사결과	총괄	••••••	••••••	•••••	••••••	 3
2.	처분요구	및 통보시	사항 	•••••••	••••••	••••••	 3
1)) 구산동 지수	석묘 정비사	업 안허가 및	공사 관라?	<u> 남</u> 업무 부당	처리 •••	··· 4
2	 문화재 현 	상변경 허기	가 이행점검	및 위반행	위 감독업무	소홀 …	· 20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개요

다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김해 구산동 지석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정비사업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한 문화재 훼손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공사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2. 8. 23.부터 10. 12.일까지 도와 김해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2. 중점 감사사항

이번 감사는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법」, 「문화재수리법」 등 법령 준수 여부, 문화재 현상변경 등 인·허가 준수 및 공사 관리·감독 업무 등 적정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이행점검 업무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2022. 8. 23.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수집, 사실관계 확인, 관계자 면담 등 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도와 김해시로부터 업무처리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은 등 주요 지적사항에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에대한 내부 심의를 거쳐 2022. 11. 30.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결과를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와 같이 총 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지적사항 총괄

 구분		행정상(건)		신분상(명)				
下正	계	주의	통보	계	징계	훈계	주의	
지적사항 2건	4	2	2	11	6	3	2	

감사결과 확인된 분야별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①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인·허가 및 공사 관리·감독업무 부당처리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허가기간 및 내용) 이행 소홀
 - 매장문화재 발굴 및 현상변경 허가 없이 정비사업 시행
 -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없이 정비사업 시행 부적정
 - 문화재수리 공사감독 업무 소홀 및 감리시행 의무 위반
 - 공사 및 감리용역 준공검사 업무 소홀
- ❷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이행점검 및 위반행위 감독업무 소홀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이행점검 업무 부적정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업무 소홀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명세 : 별첨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징계·훈계·통보·주의 요구

제 목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인·허가 및 공사 관리·감독 업무 부당처리

소 관 기 관 김해시(〇〇〇〇라)

조 치 기 관 김해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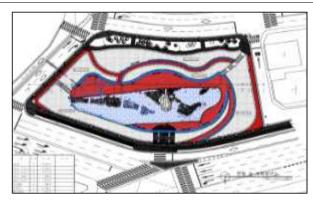
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2007년 구산동 택지개발부지 내에서 발굴되어 상석과 묘역석만 확인하고 매장주체부는 미확인된 채로 복토를 통해 지하에 보존 조치된 유적으로 2012. 7. 19. 경남도 기념물 제280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김해시 ○○○○○파에서는 국정과제 선정 및 지역주민들의 역사적 가치확인과 역사자원 활용에 필요하다는 의견 등에 따라 2019년 3월 '구산동 지석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한다)을 [표 1] 및 [그림 1]과 같이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1]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위 치 도



계획평면도

[표 1]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현황

사업	위치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
기간	1174	71 日 11 0	계	도비1)	시비
′20. 2. ~′22. 8.	김해시 구산동 1079번지(4,660㎡)	가치확인을 위한 발굴조사, 발굴조사결과 반영한 정비	1,670	1,000	670

[출처 : 김해시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김해시 ○○○○○마에서는 「문화재보호법」 및「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받아 [표 2]와 같이 정비사업을 추진해오다, 문화재 훼손사실이 언론을 통해 집중보도 되었고 관련 민원제기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22. 8. 1.)에 따라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표 2]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추진 경위

일자	개발계획, 실시설계, 인허가 등	내용				
2019. 3.	구산동 지석묘 종합정비계획 수립	· 발굴당시의 묘역시설 전체 복원				
2020. 6. 25.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도)	· (기간)2020.6.25.~2021.6.30. · (조건)계획대로 정비하되, 매장주체부 조사 실시				
2020. 9. 14.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시행	· 유적공원조성(4,660㎡) / 1,406백만 원				
2020. 11. 25.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1차분 계약	· ㈜△△△△건설				
2020. 12. 8.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착공(1차분)	· 2020.12.8.~2021.12.15. 공사시행				
2020. 12.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신청 (김해시→문화재청)	· (신청사유) 학술발굴 /(면적)2,500㎡				
2020. 12. 4	감리용역계약(비상주일반감리)	· ㈜ △△건축사사무소 · '20. 12. 8.~'21. 12. 16. 감리원배치, 용역시행				
2020. 12. 24.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문화재청)	· (내용)유적보존 정비/(면적)2,500㎡				
2021. 4. 30.	매장문화재 발굴변경 허가신청	· (신청사유) 학술발굴 · (변경사항) 면적1,532㎡, 정밀발굴조사				
2021. 5. 6.	매장문화재 발굴변경 허가(문화재청)	· (변경사유)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매장 주체부 발굴조사				
2021. 8. 6.	정밀발굴조사 결과보고	·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상석과 기단확인, 매장주체부 확인(목관묘, 옹, 두형토기)				
2021. 9. 16.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추진계획 보고	· 정밀발굴조사 반영 복원, 정비계획 수립(변경)				
2021. 10.	국가사적 지정신청(시→도)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요청 자료 제출				
2021. 11. 17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분(도)	· (조건) 제출된 신청안대로 시행할 것 · (기간) 2021. 11. 17. ~ 2022. 11. 16.				
2021. 11. 30.	정비사업(총괄) 설계변경 검토보고	· 문화재 현상변경 재허가사항 반영				
2021. 12.	국가사적 지정신청(도→문화재청)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요청 자료 제출				
2022. 1. 20.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2차분 계약	·㈜△△△건설 · 공사 시행(2022. 1. 24 .~)				
2022. 8. 1.	공사 중지명령(문화재청→김해시)	· 문화재청 민원제보 등				

[출처 : 김해시 제출자료 재구성]

¹⁾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김해시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

2.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인·허가 업무 부적정

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이행 소홀

(1) 관계법령(판단기준)

「문화재보호법」제35조(허가사항) 제1항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2)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르면 도 지정문화재에 관하여는 제35조 제1항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화재청"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 자치단체"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현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허가절차)에 따르면 법 제35조에 따라 문화 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명칭, 수량 및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시행 2015.12.17. 경상남도조례 제4102호)」 제25조(허가사항) 제4호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문화재청예규 제222호)」3) 제15조(허가 기간 만료 전·후 처리)에 따르면「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현상변경 등 허가 기간 내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지 못할 사정이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1항의 제1호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를 말함

³⁾ 동 규정 제18조(준용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법 74조에 따라 이 지침을 준용하거나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 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발생한 경우 허가기간 만료 전에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착수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현상변경 등 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김해시 ○○○○○파에서는 도지정문화재인 구산동 지석묘의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도지사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받은 내용과 조건대로 시행하고, 허가기간 내 미완료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사항 변경허가나 현상변경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2)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김해시 ○○○○○마에서는 2020. 6. 25.에 도지사로부터 [표 3]과 같이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허가기간이 2021. 6. 30. 만료되었는데도 [표 4]와 같이 2021. 11. 17. 다시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 전인, 같은 해 10. 2. 부터 10. 29. 동안 현상변경 허가 없이 [그림 2]와 같이 박석 및 기단 해체 등의 현상변경 행위를 계속하였다.

[표 3]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을 위한 현상변경 당초 허가 사항

허가일	허가기간	허가내용	허가조건
′20. 6. 25.	′20. 6. 25.	지석묘 정비공사	계획대로 정비하되,
	~ ′21. 6. 30.	※ 사업계획서 상 박석 <u>10%</u> 해체	매장주체부 조사를 실시할 것

[출처 : 김해시 제출자료 재구성]

[표 4]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을 위한 현상변경 재허가 사항

허가일	허가기간	허가내용	허가조건
′21. 11. 17.	'21. 11. 17. ~ '22. 11. 16.	묘역구간레벨, 기단유구 신재보충, 유구보존처리, 매장주체부, 유구보호, 산책로 정비계획, 경사구간 보강계획, 배수계획, 조경계획 ※ 사업계획서 상 박석 <u>30%</u> 해체	제출된 신청안 대로 시행할 것

[출처 : 김해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박석해체에 대한 현상변경의 허가내용(박석해체 10~30%)과는 다르게 [그림 2]의 작업사진 1과 같이 재허가일 이전인 2021. 10. 2.부터 2021. 10. 15.까지 거의 대부분의 박석을 해체하여 이동하였으며, [표 4]의 재허가 기간 중에는 [그림 3]과 같이 이미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이동된 박석을 세척·재설치하는 등 허가받은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수리업자인 주식회사 △△△△건설(대표 ○○○)은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된 내용에 대하여 감리원 및 발주자(감독부서)에게 서면으로 실정보고4) 조치하거나 시공 전 방침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감리원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대표 ○○○)는 위 부적정한 시공 행위에 대한 확인 및 기록과 발주자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으며, 김해시 ○○○○과는 문화재수리 발주자로서 수리업자 및 감리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 작업사진(시공사 작업일지)

[출처 : 시공사 작업일지(주간업무실적 및 계획보고, ㈜△△△△건설) 재구성]

^{4) 「}업무수행지침」제2조(정의) 제19호, "실정보고"란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리업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자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

[그림 3] 박석해체(이동) 전후 사진



[출처 : 김해시 및 도 ○○○○과 제출자료 재구성]

나. 매장문화재 발굴 및 현상변경 허가 없이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관계법령(판단기준)

「매장문화재법」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제1항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5)은 연구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등은 대통령령6)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매장문화재법」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및 제31조(도굴 등의 죄) 제2항에 따르면 이미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5) 「}매장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6) 「}매장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징역이나 1억 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산동 지석묘는「매장문화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에 해당되는 매장문화재이다.

따라서, 김해시 ○○○○○라에서는 매장문화재인 지석묘에 대하여「매장문화재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이 시행되는 유존지역 전체에 대한 발굴조사 허가와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김해시 ○○○○○마에서는 도의 현상변경 허가7) 조건이행을 위하여 2020. 12. 24. '학술발굴 목적'으로 문화재청의 발굴조사 허가8)를 받아 매장주체부 발굴조사를 시행하면 모든 인허가 행정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판단하여,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지석묘 유존지역 전체에 대한 '정비사업 목적'의 발굴조사 허가와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정비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그림 2]와 같이 2021. 10. 23.에서 2021. 10. 29. 동안 유존지역인 묘역 내에서 자연석 석축 등 설치를 위해 흙깍기, 기초터파기, 석축부 잡석다짐의 작업을 시공하는 등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허가 없이 문화재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김해시는 2021. 12월에 문화재청에 구산동 지석묘를 국가지정문화재인 국가사적으로 지정 신청하였으며, 문화재청은 지정 신청을 검토하던 중에 2022. 7월 말, 김해시 지석묘 정비과정에서 지석묘가 훼손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같은 해 8. 1. 김해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문화재 훼손상태를 확인한 후 같은 해 8. 17. 「매장문화재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김해시장을 고발하였다.

그 결과, 다수 언론에서는 도 지정문화재의 정비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구산동 지석묘를 훼손시킨 행정기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하여 김해시와 경남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7)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 (내용)지석묘 정비공사, (기간)'20. 6. 25. ~ '21. 6. 30.,

⁽조건)매장주체부 조사 실시 8)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발굴조사 허가 : (사유)유적보존정비, (기간)착수일로부터 7일간, (면적)2,500㎡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없이 사업시행 부적정

(1)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른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위임사항) 제1항의 별표 1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의 부지는 [표 6]와 같이 2008. 1. 24. 도시 관리계획(역사공원)으로 결정되었다.

[표 6]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공원명	시설의	위 치	면적(m²)			최초
	세분	게 시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인돌공원	역사공원	구산동 1079번지	4,727	감)66.9	4,660.1	′08.1.24.

[출처 : 김해시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김해시 ○○○○○과에서는 지석묘 정비·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김해시 ○○○○○과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한 2020. 9. 부터 2022. 10. 12. 감사일 현재까지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였다.

3.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공사 및 감리 관리·감독 부적정

가. 기능자 미투입 등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감독업무 소홀

(1) 관계법령(판단기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제6조(성실의무)에 따르면 문화재수리 등을 하는 자는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하고, 기준에 맞게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⁹⁾의 문화재수리 원칙에 따르면 문화재는 문화재 수리기술자(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재수리법」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제3항에 따르면 감리업무 수행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이하 "업무수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지침 제4조(발주자 기본임무) 및 제6조 (감독관의 업무범위)에 따르면 문화재수리 발주자(감독관)는 공사 및 감리에 대하여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제18조(감리보고서) 제1항 및「업무수행지침」제15조(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에 따르면 문화재수리 발주자는 감리로부터 분기별로 감리보고서를 제출받고 투입기술자 확인, 시공 검측 등의 주요 감리업무수행 및 처리상태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문화재수리법」제40조(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수리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가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 지시를 하거나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에 따르면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를 요구받은 문화재감리원이나 문화재감리원의 변경을 요구받은 문화재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김해시 ○○○○○라는 발주자로서 문화재수리 업무를 감독할 때에는 수리 업자가 문화재기술자를 투입하여 기준에 맞게 시공하는지에 대한 감리원의 시공확인, 검측 등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하고, 감리원으로부터 분기별로 감리보고서를 제출받아 주요 감리업무 기록·처리 상태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나 감리원 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문화재수리법」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제7조(공사시방서 작성)에 따라 공사시방서 내용 작성의 기준을 문화재청에서 고시(제2019-125호, 시행 2020. 1. 1.)한 것이며, 공사 시방서는 설계도서의 일부분으로서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 표준에 대한 규정임

(2)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김해시 ○○○○○마에서는 2021. 10. 2.부터 2021. 10. 15.까지 박석유구를 해체하면서 수리업자 주식회사 △△△△건설(대표 ○○○)이 문화재기능공없이 단순노무(보통인부) 인력만을 투입하여 시공하고, 감리원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대표 ○○○)가 이에 대한 확인 및 감리기록, 감독관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발주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사 및 감리원의 업무 수행 전반에대하여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더욱이 위 박석유구 등 해체에 관한 공종은 문화재 원형보존 및 정비와 관계된 것으로서 발굴된 박석유구 및 기단석, 기단기초석의 해체에 관하여는 거친돌 해체로 표기되어 [표 7]과 같이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고, 해체에 소요되는 노무비는 [표 8] 일위대가¹⁰⁾표와 같이 거친돌 해체 m³당 문화재기능자¹¹⁾(한식석공 및 한식석공조공) 96%, 보통인부 4% 비율로 산정되어 있어, 반드시 해당 문화재기능공투입여부에 대하여 확인·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7] 유구복원공종(박석 해체) 설계내역서(발주분)

품명(유구복원공사)	규격	단위	수량	노무비 (E 단가	단위 : 원) 금액	비고
거친돌해체 0.035㎡ 이하 (박석유구, 기단석, 기단기초석)	-	m³	18.91	865,854	16,373,299	호표 4

[출처 : 김해시 제출자료 재구성]

[표 8] 일위대가표(호표 4)

품 명	ᄀ걸	규격 단위		노무비	비고	
급 경	πή 	근귀	수량	단가	금액	ᅵᆜ
거친돌해체 ().035m³ 이하				865,854	호표 4
한식석공	문화재 직종	인	1.88	333,973	627,870	06%
한식석공조공	문화재 직종	인	0.75	246,892	185,169	96%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38	138,989	52,816	4%

[출처 : 김해시 제출자료 재구성]

¹⁰⁾ 단위당 가격이라는 의미이며, 각 항목별 단위수량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를 산출한 것 11) 「문화재수리법」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한식석공 등 20종류로 분류됨)

또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기간 동안 감리원으로부터 분기감리보고서를 총 4회 제출받아야 하나, 감리원이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감리원에 대한 시정 지시나 감리원 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발주자의 감리시행 의무 미이행

(1) 관계법령(판단기준)

「문화재수리법」제38조(감리의 시행 등) 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수리 발주자는 문화재 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발주자는 같은 법 제59조 (벌칙)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업무수행지침」 제2조(정의) 및 제4조(발주자 기본임무), 제6조(감독관의 업무범위)에 따르면 문화재수리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에 필요한 적정 기간과 대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화재수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변경계약문서에 표기된 감리기간 및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원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김해시 ○○○○○마에서는 문화재수리 발주자로서 감리시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감리를 시행할 때는 감리에 필요한 적정기간과 대가를 확보하고 문화재 수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변경계약문서에 표기된 감리기간 및 계약내용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2)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김해시 ○○○○○마에서는 [표 9]와 같이 2022. 1. 24.부터 시작된 2차분 공사에 대하여 감리용역 계약기간 연장 또는 추가 계약(발주)을 하지 않은 채 감리기간이 2022. 8. 30.까지로 기재된 감리원 배치확인표만 제출받아 계약이 이미만료된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문화재수리법」에서정한 감리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 9]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공사 및 감리 기간

		공사 계약기	간	フトコレ みしのとつしてし
차수	계	약일	계약기간	감리 계약기간
	최초	′20.11.25.	′20.12. 8. ~ ′21. 8. 4.	
1차분	1차 연장	′21. 7.30.	′20.12. 8. ~ ′21.10.10.	<u>′20. 12. 8. ~ ′21. 12. 16.</u>
	2차 연장	′21.10. 8.	′20.12. 8. ~ ′21.12. 2.	※ '21. 12. 17. 완료(준공)검사
	3차 연장	′21.11.30.	′20.12. 8. ~ ′21.12.31.	
	최초	′22. 1.20.	′22. 1.24. ~ ′22. 6.30.	
2차분	1차 연장	′22. 6.28.	′22. 1.24. ~ ′22. 7.30.	기약 <u>없이</u> 감리원 배치확인표만 제출받아 감리업무 수행
	2차 연장	′22. 7.25.	′22. 1.24. ~ ′22. 8.30.	

[출처 : 김해시 제출자료 재구성]

다. 발주자의 준공검사 업무 소홀

(1)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대가의 지급)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법 시행규칙 제65조(검사)에 따르면 검사를 한 자는 검사결과 계약이행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조치에 관한 의견 등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업무수행지침」 제32조(준공검사) 및 제33조(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에 따르면 준공검사자는 준공도서 및 감리 업무일지 등 제감리 기록을 확인하여야 하고, 수리업자가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한 감리원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재수리 발주자인 김해시 ○○○○○과에서는 공사 준공검사를 할 때 감리원으로부터 준공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하고,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계약내용 및 계약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한 뒤 대가가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2)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김해시 ○○○○○마에서는 2021. 12. 17. 이 사업 1차분 공사 준공검사 당시 [표 10]과 같이 1차분 공사의 유구복원공사, 우수공, 구조물공 등 과업 일부는 완료되지 않았거나 준공 후 2차분 공사의 시행기간에 시공되었고, 박석해체 등 이사업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감리원 검토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검토 없이 준공조서 등을 적합한 것으로 작성하여 준공처리함으로써 공사비 850,000천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명 칭	규격	단위	수량	실제 시공시기
	가설사무소 해체	3.0×6.0×2.6m	개소	1	미해체
가설공사	가설창고 해체	3.0×6.0×2.6m	개소	1	미해체
	가설방음판 해체	RPP 4.0m	m	280	미해체
	거친돌 쌓기	0.035㎡이하	m³	211	'22. 6월 ~ 7월 (일부물량)
	자연석	-	m³	201	'22. 6월 ~ 7월 (일부물량)
유구복원	되메우기	토사, 인력	m³	91	'22. 6월 ~ 7월 (일부물량)
공사	보차도 경계석(화강암)	200×300×1000	m	39	'22. 7월
	보차도 경계석(곡선)	200×300×1000	개	41	'22. 7월
	되메우기 및 다짐	굴삭기0.2+핸드가이드0.7	m³	363	'22. 7월
토목공사	사토 운반(토사)	덤프24톤+백호1.0	m³	12,901	'21. 1월 ~ '22 7월
	법면보호공	평떼	m²	2,085	'22. 5월 ~ 6월
	터파기(토사)	백호0.2	m³	280	'22. 5월 ~ 7월
	되메우기 및 다짐	굴삭기0.2+핸드가이드0.7	m³	213	'22. 6월 ~ 7월
우수공	파형강관부설 및 접합	500×2.0T	m	250	'22. 6월 ~ 7월
TT0	PE유공관부설 및 접합	D300	m	114	'22. 6월 ~ 7월
	집수정 설치	800×800×1000~1500	개소	9	'22. 6월 ~ 7월
	우수저장소 설치	8700×5700×2800	개소	1	'22. 5월 ~ 6월
구조물공	자연석석축 쌓기	h=0.5~2.0 type a,b,c,d	m	256	'21. 11월 ~ '22. 7월
工工豆	자연석계단 설치	b=2.0~10.0	개소	3	'22. 1월 ~ 4월
	옥외용벤치	1600×440×450	개	18	미시공
부대공	자동세륜기 해체	-	대	1	'22. 4월
T410	철근운반	구역화물	ton	9	'22. 5월 ~ 6월
	하차비(구역화물)	자재하차비	ton	113	'22. 5월 ~ 6월

[표 10] 1차분 공사 준공 시 과업 미완료 내역

[출처 : 김해시(1차분공사 내역서), 감리단(검측서), 시공사(주간 업무실적)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박석유구 해체 등 시공 부적정에 대한 보고서 및 준공의견서 미제출 등 감리의 계약이행의 내용이 적합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한 조치 없이 2021. 12. 17. 완료조서를 적합한 것으로 작성하여 감리용역을 준공(완료)처리하고 감리비 22,474천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김해시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해시장은

- ①「문화재보호법」제35조 등을 위반하여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인·허가 업무와 공사 및 감리 관리·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과 지방○○○○ 실무담당자 ○○○○의 지방○○○○○ ○○○은「지방공무원법」제72조에 따라 '중징계'처분하고, 감독책임자 ○○○○의 지방○○○○의 지방○○○○의 지방○○○○의 지방○○○○○의 지방○○○○○ (경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중징계, 경징계)
- ③ 「문화재수리업」 제6조 등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문화재수리업자와 감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및 자격취소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④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지 1] 박석 및 기단해체 공정 사진(시공사 주간업무실적 및 계획보고자료)



작업사진 (2021.10. 2.-2021.10. 8.)

	7	-11.F	T	三 二 3	l 계획.	T T		Ť	간업무	실식 및	는 계획	보고 🦱
					시 공 사			14.30(F4 - 1500 H50)	SADE SON		시공사	
공사명 :	구산동 저석묘	정비사업			공사기간	2020,12.08 - 2021,12.02	공사명 :	공사명 :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2020,12,08 - 2021,12.02
	10.00	755	Yes	1 8257 7 7 200	감리기간	2020.12.08 - 2021.12.16		D) D)	1 - 1 - 2	1 7 3	감리기간	2020,12.08 ~ 2021,12.16
	차 수	구 분 계 획		계 획		계획대 실적 대비		차 수	구 분	게 획	실 시	계획대 실적 대비
주간공정	총 자	+	계 83,92% 27.17% 32.37% 주간공정	총 자		누 계	准 83,92%	27.17%	32.37%			
	G	音	추	1,96%	3.00%	153.06%		38875.7%	급 주	1,96%	3,00%	153.06%
₹ ₹	(2021.	급주 추진 10, 02 ~		10, 08)	(20:	내주 추진 계획 21, 10, 09 ~ 2021, 10, 15)	공 종		급주 추진 실적 0, 09 ~ 2021		(20	내주 추진 계획 21, 10, 16 - 2021, 10, 22)
가설							가설					
유구복원	- 박석 및 기	한 해체			- 박석 및 기(± 해제	유구복원	- 박석 및 기단	· 師期			
조경							조경					
토목							토목				- 흙깍기 - 기초타파기	
배수							배수					
기타	- 무짐약 겉이	1471			- 시의회 방문	예정	기타	- 시의회 현장	방문 10월13일		-	
감리							감리					
건의사항							건의사황					

[출처 : 시공사(주식회사 △△△△건설) 제출자료 재구성]

[별지 2] 박석유구 설치 공정 사진(시공사 주간업무실적 및 계획보고자료)



작업사진 (2022. 6.18.-2022. 6.24.)

		간업무	크기크	- /11-4	T-1.	
			시공사)		
공사명 :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공사기간			
			감리기간	2020,12,08 - 2022.06,30		
주간공정	차 수	구 분	계 회	실 시	계획대 실적 대비	
	총차	午 계	96,78%	86.32%	89,19%	
		급 주	1.22%	0.40%	32.78%	
공 종	금주 추진 실적 (2022, D6. 18 - 2022, D6. 24)			내주 추진 계획 (2022, 06, 25 - 2022, 07.02)		
가설						
유구복원	- 묘역부 박석설치 - 유구 토양처리			- 묘역부 박산설치 - 유구 토망처리		
조검				- 전디일부 추가 식재		
토목	- 우수저장소 내부 방수하업			-		
배수	- 집수정 및 유공관 파현강관 등 설치 - 비수로 관로 연결			- 집수점 및 무공관 파형강관 등 설치 - 배수로 관로 연결		
기타				- 무수저장소 내부 설비시설		
감리						
건의사항						

				시공사	
공사명 : -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곱사기간	2020.12.08 - 2022.06.30	
			감리기간		
주간공정	차 수	구 분	게 최	실 서	계획대 실적 대비
	층 차	누 계	100.00%	86,72%	86,72%
		금 卒	2.00%	0.40%	20.00%
공 종	금주 추진 실적 (2022. 06. 25 ~ 2022, 07, 02)			내주 추진 계획 (2022. 06. 25 - 2022. 07.02)	
가설					
유구북원	- 모역부 박석설치			- 묘역부 박성설치	
조경	- 잔디일부 추가 식재			(#)	
토목	-			(#)	
배수	4			- 집수정 및 유공관 파형당관 등 설치 - 배수로 관로 연결	
기타	-			- 우수저장소 내부 설비시설	
감리	- 공기연장계약	t (2022년07월3)	0일까지)		
건의사항					

주간업무실적 및 계획보고('22.06.18.-'22.06.24.) 주간업무실적 및 계획보고('22.06.25.-'22.07.02.)

[출처 : 시공사(주식회사 △△△△건설) 제출자료 재구성]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징계·훈계·통보·주의 요구

제 목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이행점검 및 위반행위 감독 업무 소홀

소 관 기 관 경상남도 ㅇㅇㅇㅇ과

조 치 기 관 경상남도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 ○○○○자(구 ○○○○○○자12))에서는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도 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사항의 이행실태 점검 업무와 허가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1항의 현상변경 등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222호)13)」 제16조(현상변경 이행상황 점검)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허가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전년도 허가사항 전체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14)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42조(행정명령)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문화재청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

^{12) 2022. 8. 4.}자 경상남도 조직개편으로 부서명칭 변경되었음

¹³⁾ 제3조(적용범위) 및 제18조(준용 규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르고 도지사는 법 74조에 따라 이 지침을 준용하거나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 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14) 「}문화재보호법」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문화 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도 지정문화재에 관하여 상기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 ○○○○과에서는 도지정문화재인 구산동 지석묘의 현상변경 허가에 대하여 매년 또는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허가내용 및 조건 등의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도 ○○○○과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문화재보호법」제35조에따라 현상변경 허가받은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2022년 1월과 4월에 되어서야 두 차례에 걸쳐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현상 변경 허가 실태조사를 위한 "도 문화재 현상변경 등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김해시에 자체 점검하도록 통보하였고, 2022. 5. 3. 김해시가 자체 점검 후 제출한 2021년도 현상변경 이행상황 점검 결과에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만 믿고 김해시의 이행상황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음은 물론, 직접점검을 통한 별도의 보완 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도 ○○○○과에서는 당초 현상변경 허가기간이 만료된 2021. 10. 28. 김해시의 허가기간 연장 등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현지조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현장 입구에서 김해시 담당자로부터 현상변경 허가 신청사항에 대한 설명만 듣고 실제 현장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 지석묘 묘역 내에서 흙깍기, 기초터파기 등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무허가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당시 실무담당자의 출장복명서에도 조치사항으로 허가신청 건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상정을 거쳐 허가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현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 당초 현상변경 허가기간이 만료된 2021. 7. 1.부터 재허가가 통보된 2021. 11. 17. 사이에 [그림 1]과 같이 지석묘 묘역 내에서 흙깍기, 기초터파기, 석축부 잡석다짐 등 김해시에서 무단으로 현상변경 행위를 한 사실이 [그림 2]의 시공사 작업일지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그림 1] 현상변경 무허가 기간의 작업사진

[출처 : 시공자 작업일지(㈜△△△△건설)]

[그림 2] 현상변경 무허가 기간 시공사의 작업일지



[출처 : 시공자 작업일지(㈜△△△△건설)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도 ○○○○파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현상변경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시·군 업무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이행실태점검도 차질없이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①「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제16조 등을 위반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이행점검 및 위반행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현 ○○○○과)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 및「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 등에 따라 '경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실무책임자 ○○○○과 지방○○○○○○(현 ○○○○과)은「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 감독책임자 ○○○의 지방○○○ 지방○○○○ 지방○○○ ○○(현 ○○○○과)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경징계, 훈계, 주의)
- ②「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제16조 등을 위반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아 지방○○○○ ○○○(현 ○○○○라)는「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실무책임자 ○○○아 지방○○○○ ○○○(현 ○○○○○라)는「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훈계, 주의)
- ③ 현상변경 허가 처분 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하는 사항 등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매뉴얼(인허가 내용 및 관련 법령, 인허가 기관 및 신청방법 등)을 제작·안내하고 현상변경에 대한 이행점검 강화를 통한 도지정문화재의관리체계를 정비 하는 등 문화재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④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